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30787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부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피 고 1. A

2. B

3. C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강창욱

변 론 종 결 무변론(피고 A에 대하여)

2021. 1. 26.(피고 B, C에 대하여)

판 결 선 고 2021. 2. 23.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8,499,998원 및 그 중 17,951,137원에 대하여 2020. 2. 12.부터 2020. 3. 16.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피고 B, C 사이에 2019. 8. 22.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

하고,

나. 피고 B, C는 피고 A에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19. 8. 23. 접수 제 47485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가) 원고는 2014. 9. 16.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 2015. 9. 2.(이후 기한이 연장되었다), 보증금액 20,000,000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A는 같은 날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D은행으로부터 17,6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A가 2019. 8. 31. 원금을 연체하자, D은행은 2019. 9. 2.경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D은행에 2020. 2. 12. 대출원리금 17,951,137원(= 원금 17,600,000원 + 이자 351,13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구상채권의 행사 또는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제10조), 원고가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389,741원이며, 또한 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추가보증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제3조), 이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보증료는 159,120원이다.

라) 원고와 피고 A는 이 사건 보증약정 체결 당시 보증채무가 이행될 경우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다.

2) 피고들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A는 2019. 8.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피고 C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8.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19. 8. 23. 접수 제47485호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인 2020. 2. 12. 피고 A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9일 만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점, ③ 실제로 원고가 2020. 2. 12. D은행에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가) 피고 A의 무자력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금정

구청장,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는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17,600,000원, E 주식회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채무 60,000,000원, F은행에 대한 신용대출채무 32,391,000원, G은행에 대한 신용대출채무 2,996,000원, 신용카드 단기대출채무 9,000,000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41,000,000원, 피고 B에 대한 차용금채무 40,000,000원, 피고 C에 대한 차용금채무 13,500,000원 합계 216,487,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69,3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시가 109,000,000원 상당의 부산 동래구 H주택 I호를 소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인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 즉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추정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수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 45364 판결 등 참조). 피고 A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던 이상, 채무초과상태였던 피고 A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들 중 피고 B, C에게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자인 피고 A, 수익자인 피고 B, C의 악의는 각 추정된다.

다) 피고 B, C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 C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가 무자력 상태임

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 A가 2019. 6.경부터 위 피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위 피고들의 피고 A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각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A와 피고 B,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 C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진

부동산의 표시

1. 부산광역시 강서구 J 답 2,314㎡

중 A 지분 2,314분의 330. 끝.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신용보증과 금융기관의 대출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함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정부 등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금융기관이고, 피고 A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받은 자이며, 피고 B, C는 피고 A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합니다)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자들입니다.

원고는 피고 A의 의뢰에 따라 피고 A가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고, 그 보증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갑 제1호증의 1 신용보증서, 1호증의 2 신용보증약정서 각 참조).

[금액단위 : 원]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대출과목	대출기관
2014. 9. 16.	K	20,000,000	일반자금	D은행

2.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

가.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는 원고의 위와 같은 신용보중에 기하여 대출을 받은 후, 2019. 8. 31.경 원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내었고, 원고는 D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20. 2. 12. 그 동안 피고 A가 상환하지 못한 대출원리금 17,951,137원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신용보증사고통지서, 제3호증 대위변제증서 각 참조).

(2) 한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8조 및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약정한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소정의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는데, 그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입니다(갑 제4호 중 손해금을 변경 참조).

나. 법적절차비용, 추가보증료 및 구상금채권 잔액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가 구상채권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으로 412,880원을 지출하였으나, 그 중 23,139원을 회수함으로써 남은 법적절차비용은 389,741원입니다(갑 제5호증의 1 구상권원장, 5호증의 2 채권현황 각 참조).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및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서 제3조에 의하면, 피고 A는 보증기간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추가보증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피고 A가 부담하여야 할 추가보증료는 159,120원입니다(갑 제5호증의 1 구상권원장, 5호증의 2 채권현황 각 참조).

따라서,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은 대위변제금 17,951,137원, 법적절차비용 잔액 389,741원, 추가보증료 159,120원의 합계 18,499,998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7,951,137원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입니다.

3.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신용보증에 기하여 대출을 받은 후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한 피고 A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17,951,137원, 법적절차비용잔액 389,741원, 추가보증료 159,120원의 합계 18,499,998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7,951,137원에 대한 대하여 원고가 D은행에 대위변제한 날인 2020. 2.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